

덕 윤리의 현대적 의의

황경식*

【요약】

현대사회에서 다시 덕의 윤리가 문제되는 것은 근세 이후 도덕적 결정성을 제고하기 위한 최소화 전략과 가시화 전략을 추구한 귀결로서 최소 윤리로서의 의무 윤리에 대한 불만에 기인한다. 우선 의무의 윤리가 갖는 문제 중 하나는 지나치게 정당화에 편향된 데 비해 동기화에 소홀함으로써 정당한 행위임을 알면서도 그 실천에 실패하기 때문이며, 도덕적 행위의 스펙트럼을 도덕적 의무사항 일변도로 축소하는 도덕적 환원주의로 인해 도덕경험의 다양성 내지 풍요성이 손상되고, 또한 지나치게 행위중심적인 성향으로 인해 도덕에서 보다 중요한 의미를 갖는 동기 등 내면적 가치를 도외시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현대사회에서 다시 덕의 윤리를 재활하기 위해서는 행위지침으로서 덕 윤리의 자립성을 위해 몇 가지 선결요건의 충족이 요구되는데 우선 공동체적 유대에 바탕한 전통사회가 아니라 익명적인 현대사회에 유효한 행위지침이 되기 위해서는 덕의 윤리가 갖는 도덕적 결정성을 제고하는 방도의 구상이 요구된다는 점이다. 현대사회를 전통사회로 재편하는 것이 불가능할 경우 결국 덕의 윤리는 의무 윤리의 대안이기보다는 그것을 보조하는 보완 윤리로서 제시되는 것이 합당한데 이를테면 공동체적 자유주의 사회에서 유덕한 시민 윤리 같은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주제어】 의무 윤리, 덕 윤리, 도덕적 결정성, 최소 윤리, 정당화, 동기화

* 서울대학교 철학과

I. 덕 윤리의 일상언어적(日常言語的) 유산: 한국의 경우

우리의 도덕적 현실에서 이미 덕 윤리(德倫理)가 도덕적 행위지침으로서 퇴조한지는 오래인 듯 하다. 그러나 우리의 일상언어적 용례(用例)에서 아직 덕 윤리적 유산이 곳곳에서 잔존하고 있는 것을 보면 우리의 도덕의식에 있어 덕 윤리의 역할이 아직도 완전히 소멸되었거나 무의미한 것은 아님을 반증해주는 단서가 아닐까 생각해 본다. 나아가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도덕적 현실을 성찰하고 보완하는 시발점을 찾는 데 있어서도 이 같은 단서는 소중한 자산이 될 것이라 생각하며 덕 윤리의 재활이 어떤 방식에서 이루어지든 그러한 유산은 재활의 기반으로서의 가치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우리가 일상에서 덕 윤리적 유산의 한 사례로서 자주 만나게 되는 용어법은 사람의 됴됨이를 평가할 경우 재승박덕(才勝博德)이라는 말을 자주 쓰기도 듣기도 한다는 점이다. 어떤 사람이 가진 재주가 많고 재기는 발랄하나 그를 밑받침할 성품이나 인품이 듚적하지 않을 경우 우리는 재승박덕이라 평가한다. 사람이 무언가 푹부러지고 난척하며 되바라지지만 할 뿐 어딘가 수터분하고 푸근하며 은근한 인품이 뒤따르지 못한 경우이다. 이는 우리가 사람됨을 평가할 때 어떤 전인격적인 가치나 이념을 전제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단지 지적인 능력이나 기능만이 아니라 정서적 안정과 의지적 견실함이 더해진 전인격적인 무언가가 결여될 경우 인간으로서 신뢰를 하기 어렵다는 뜻이다.

둘째로, 우리는 어떤 일의 성취를 자신의 능력만이 아니고 배후에서 도움을 준 그 누구의 덕분(德分)이나 덕택(德澤)으로 돌리는 말을 자주 하기도 듣기도 한다. 그런 성취가 나만의 능력이나 노력만이 아니고 배후에 있는 타자들의 도움이 더해져서 이루어졌다는 것이다. 이는 일정한 성취의 직접적 원인(因)만이 아니고 그러한 원인이 작용할 수 있도록 배후에서 보조한 환경이나 간접적인 원인(緣)에 언급함으로써 인간만사가 상호 도움을 주고받는 어떤 호혜적 공동체 내지 네트워크의 그물망 속에서 이루어짐을 함축한다. 그리고 이 같은 네트워크에

는 조상의 숨은 도움(陰德) 내지 귀신이나 하늘의 도움(天佑神助)까지도 포함된다
는 것을 알 수 있다.

세 번째 경우는 우리가 어떤 어려움에 봉착했을 때 자주 쓰는 말로서 그
같은 낭패가, 일을 도모한 나 자신의 ‘부덕(不德)의 소치’로 돌리는 용례이다.
이는 자신이 도덕적으로 부족하고 그래서 부덕하며 따라서 일이 잘못된 것에
대해 도덕적 결함을 가진 자신에게 그 책임을 돌린다는 것이다. 이는 단지 개인의
수준에서만이 아니고 과거 나라에 가뭄이나 환란이 닥쳤을 때 왕은 흔히 ‘짐이
부덕(不德)하여 일이 이지경이 되었다’고 표현되는 언어적 관행을 통해서도 알
수가 있다. 개인이건 나라의 지도자이건 간에 수양을 통해 도덕적 덕(德)을 갖추
 경우 그것이 갖는 도덕적 감응력으로 만사형통하고 국태민안하게 된다는 것이다.
이는 인간이 갖는 덕(德)은 사태의 성패를 좌우하는 역량, 감응력, 카리스마를
 갖기도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지성이면 감천이라는 말도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을 것이다.

이상에서 살펴본 일상 언어적 용례에서도 짐작할 수 있지만 우리 사회의
도덕적 현실 내지 현주소는 서구의 현대사회와 완전히 동일시하기 어려운 그
무엇을 함축하고 있는 듯하다. 서구는 이미 수 세기 전부터 중세사회와 결별하고
근세사회로 진입하여 근대화, 현대화 과정이 지속됨으로써 전통 사회적 잔재를
청산한지 오래인 것으로 보인다. 그야말로 서구사회의 규범문화는 덕 윤리적
단계로부터 상당한 거리를 취하고 있으며 법에 기초한 사회이념 즉 법치주의를
상당한 정도 구현하고 있는 단계에 이르렀다 할 것이다. 그러나 한국사회는
법보다는 덕에 의한 규범윤리적 전통을 지속해온 유교사회로부터 벗어난 지
그다지 오래지 않으며 법치사회로의 이행이 시작되긴 했으나 아직은 어중간한
단계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유교윤리의 전통에 있어서는 법 특히 형법은 하층민의 행동을 규제하기
위한 것일 뿐 상식 있는 사람들을 위한 행위지침은 적어도 이념적으로는 인의를
중심으로 한 덕의 윤리였다 할 수 있다.) 따라서 우리 사회에 있어서는 외견상
법치사회를 지향하고 있기는 하나 아직도 법치의 이념이 일상화, 내면화 되지

못하고 있는 듯이 보이며 지금도 법치사회보다는 윤리사회를 지향하는 듯이 보이는 부분이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우리의 규범문화는 서구사회에 비해 보다 덕 윤리 친화적인 상태에 있는 듯하며 그래서 덕 윤리적 잔재나 유산이 우리의 도덕의식 곳곳에 잔존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II. 현대사회가 왜 다시 덕 윤리(德倫理)를 요청하는가

현대사회에서 다시 덕의 윤리가 문제되는 것은 어떤 연유에서인가? 그것은 근대에서 현대에 이어지는 규범문화 자체에 대한 불만족에서 비롯되는 것은 아닌가? 그렇다면 이는 근세 이후 추구해온 윤리적 삶과 그런 삶의 형태를 요구하는 근세 시민사회, 나아가서는 이 모든 것을 포괄하는 근대성(modernity) 자체에 대한 일종의 문화비판과 연계된 것은 아닌가? 등등의 물음이 제기된다. 근세 이후 추구되어온 최소윤리로서 의무윤리에 대한 불만 내지 도덕적 환원주의에 대한 회의는 근세 이후 대두된 자유주의적이고 다원주의적 시민사회가 치러야 할 갖가지 사회적 비용에 대한 비판과도 관련된다 할 것이다. 삶의 근간을 이루는 도덕체계와 이를 요청하는 사회구조 간에는 긴밀한 상관관계가 있기 때문이다.

우선 근세 이후 현대에 이르기까지 지배적인 윤리는 의무의 윤리(duty ethics)라 할 수 있다. 그리고 의무의 윤리에 있어서는 어떤 행위가 의무의 행위로서 정당한 행위이며 그것이 왜 정당한 것인지 논거를 제시하는 정당화(justification)의 과제가 우선적으로 요구된다. 근세 이후 대두된 시민사회는 전통적 유대가 해체되고 가치관의 다원화가 급속히 진행되는 바, 복잡한 다원주의 사회에로의 성향을 보이며 이같이 다원화된 복잡사회를 규제, 관리할 규범체계는 성원들에게 가지성(可知性)과 구속력을 담보하기 위해 고도의 도덕적 결정성(moral determinacy)을

1) 「禮記」에는 “刑法은 대부에게까지 올라가지 않고 禮道는 서민에게까지 내려가기 어렵다”고 했다.

요구하게 된다.²⁾ 그리고 결정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가능한 한 성원들의 가치관이 중첩하는 공통요소에 부합하는 최소화 전략과 성원들의 이해와 설득력을 높이는 가시화 전략이 요구된다 할 것이다.

필자가 생각하기에 이같이 도덕적 결정성을 제고하기 위한 최소화 전략과 가시화 전략을 추구한 귀결이 바로 의무의 윤리가 아닌가 한다. 도덕적 행위의 스펙트럼에 있어 의무사항은 그야말로 성원들의 가치관의 다양성에도 불구하고 공유할 수밖에 없는 최소윤리라 할 수 있으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공동체에 상당한 해악을 유발할 것으로 예견되는 까닭에 그만큼 책임도 무거운 부분이라 할 수 있다. 또한 의무사항은 성원들 누구에게나 쉽게 이해되는 공지성을 지녀야 하는 바 명시적으로 진술되어야 하고 따라서 규칙화를 요구하게 된다. 그러므로 의무의 윤리는 또한 규칙의 윤리(rule ethics)와도 친화성을 갖는다 할 수 있다. 그러나 이같이 규칙에 기반한 의무의 윤리는 준(準)법적 유형의 윤리로서 도덕적 결정성을 제고하기 위한 고가의 비용을 치르게 되는 바, 도덕의 본령에서 멀어지게 되고 이에 따라 도덕적 행위자들에게 불만의 소지를 갖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³⁾

우선 근세 이후 지배적인 의무의 윤리가 갖는 난점은 그것이 정당화에 지나치게 편향된 관심을 갖는 데 비해 동기화의 과제에 대해서는 소홀히 하고 있다는 점에서 비롯된다. 그 결과로서 도덕적 행위자들은 어떤 행위가 도덕적으로 가치 있고 정당한 의무적 행위임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행하고자 하는 동기부여가 되지 않아 갈등하게 되고 고심하게 된다. 이 같은 의무감과 동기부여간의 갈등은 일종의 자기분열(schizophrenia) 현상을 초래하게 되는데 이는 결코 도덕적으로 바람직한 현상이라 할 수 없는 것이며 우리가 자주 당면하는 의지나약, 자기기만, 양심의 가책등도 비슷한 범주에 속하는 도덕경험이라 할 수 있다.⁴⁾

의무와 동기간의 이 같은 부조화와 갈등은 아는 것과 행하는 것간의 문제

-
- 2) Alan Gewirth, "Rights and Virtues," *Review of Metaphysics*, 38(June 1985), 739-762.
 3) 황경식, 「도덕체계와 사회구조의 상관성」, 『철학사상』 제32호(2009), 제3절, 4절 참조.
 4) Michael Stocker, "The Schizophrenia of Modern Ethical Theories" in *Virtue Ethics*, ed. Roser Crisp and Michael Slote(Oxford University Press, 1997).

즉 지행(知行)의 문제와도 관련되어 있다. 소크라테스는 제대로 알면 행하지 않을 수 없다 하여 강한 지행합일론을 내세웠지만 우리의 도덕적 현실은 이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것을 자주 경험하게 된다. 의무로서 정당한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고서도 우리는 자주 갖가지 유혹으로 인해 그러한 행위에 미치지 못하게 된다. 우리는 자주 도덕적으로 무관심하거나 의지의 나약으로 인해 그러한 의무수행에 실패하게 된다. 물론 자제심의 결여(akrasia)가 생겨난 원인에는 지식의 불완전성도 있기는 하나 정서의 부조화나 의지의 취약도 있음이 인간의 도덕적 현실임을 간과하기 어렵다 할 것이다.

또한 의무의 윤리가 불만족스러운 이유 중 하나는 도덕적 행위의 스펙트럼은 의무사항만으로 환원하기 어려운 다양성이 존재하며 따라서 의무사항 일변도의 도덕적 환원주의는 인간의 도덕경험이 갖는 다원성을 무시한다는 점에서 찾을 수 있다. 이를테면 도덕적 행위를 도덕적 의무사항, 금지사항 나아가 도덕적으로 무관한 허용사항(permissiveness) 등으로 나눌 경우 도덕적으로 가치 있는 행위들의 일부가 배제될 수 있다. 이를테면 성인다운 행위(saintly action), 영웅적 행위(heroic action) 등은 도덕적으로 높이 평가되는 행위이기는 하나 그것이 앞서나온 3분법에는 포용되지 못한다. 이 같은 행위들이 의무사항이나 금지사항도 아님은 물론 더우기 허용사항도 아니며 도덕적으로 높이 평가될 권장사항(recommendable)이라 함이 옳을 것이다.⁵⁾

굳이 이같이 대단한 의무 이상의 행위가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의 일상에는 보통사람들이 조금만 노력하면 수행 가능한 다양한 의무 이상의 행위들(supererogatory actions)이 있다. 친절한 행위, 용기 있는 행위, 배려하는 행위 등은 굳이 의무로서 요구되는 것은 아니나 도덕적으로 바람직한 행위로서 덕의 윤리에서는 도덕적 행위의 근간을 이루고 있다. 이상과 같이 살펴볼 때 의무의 윤리는 도덕적 행위에 대해 지나치게 좁은 입장을 취하고 있으며 따라서 우리는 도덕적 의무사항이나 금지사항 나아가서는 도덕적으로 무관한 허용사항을 넘어

5) Kyungsig Hwang, "Dialogue between Eastern and Western Morality: Complementarity of Duty Ethics and Virtue Ethics," *Philosophy and Culture* Vol.4(2008), 41-42.

의무 이상의 행위 즉 도덕적으로 권장할 사항이라는 항목을 포함하는 보다 넓은 스펙트럼을 수용해야 하며 도덕적으로 가치 있는 것은 오히려 권장사항에 있다고 할 수 있는 것이다.

또한 의무의 윤리가 갖는 난점은 그것이 지나치게 행위중심적 윤리라는 점에 있다. 행위는 그 결과가 객관적이고 공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외적으로 표현된 대상이다. 그러나 윤리적으로 이에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외적으로 표현되기 이전의 내면적 가치로서 도덕적 동기와 의도이다. 윤리나 도덕의 본령은 오히려 이 같은 내면적 가치에 있는 것으로 생각될 수 있으며 외적인 표현으로서 나타난 행위를 문제삼을 경우 법과 도덕을 구분하기도 어려워질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같이 지나치게 외적인 표현을 도덕의 중요한 잣대로 삼을 경우 그것은 도덕에 대해 다소간 행태주의적(behavioristic) 편향을 보이는 이해라 할 수 있을 것이다.⁶⁾

나아가서 의무의 윤리는 규칙중심적 윤리와의 지나친 친화성으로 인해, 외적 표현으로서 행위중심적 윤리와 마찬가지로 관점에서 도덕에 대한 준(準)법적인 이해를 보이는 듯이 생각된다. 또한 도덕을 법규의 체계로 이해함으로써 빈틈없는 연역적 체계로 오도할 우려마저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윤리나 도덕에는 헤어(R.M. Hare)의 지적처럼 원칙의 측면과 결단의 측면이 있는 것으로서 결단의 측면에 주목할 경우 도덕적 주체의 창의적이고 자율적인 선택의 문제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더욱이 우리가 당면하는 도덕적 상황은 저마다 고유하고 애매한 성질을 갖는 까닭에 주체의 관여에 의한 도덕적 창조성(moral creativity)은 더욱 강하게 요청된다 할 것이다. 결국 도덕에는 법률가적 모형(lawyer's model)을 생각할 수도 있으나 예술가적 모형(artist's model) 또한 고려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⁷⁾

6) Kyungsig, Hwang, "Dialogue between Eastern and Western Morality: Complementarity of Duty Ethics and Virtue Ethics," 42-44.

7) Kyungsig Hwang, "Dialogue between Eastern and Western Morality: Complementarity of Duty Ethics and Virtue Ethics," 44-45.

이상에서 제시한 제반 논점들을 참고할 경우 우리는 근세 이후 지배적인 의무의 윤리가 여러 측면에서 만족스럽지 못하며 따라서 이를 대체할 대안적 모형을 구상하거나 아니면 적어도 상당 부분 보완할 수 있는 여지가 모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난국을 타개하기 위한 대안이나 보완책을 제대로 구상하기 위해서는 신중하게 고려되어야 할 선행요건들이 있음에 주의해야 한다. 우선 근세 이전의 전통사회를 지배했던 윤리체계인 덕의 윤리가 손쉬운 하나의 대안으로 떠오를지 모르나 시대상황과 사회구조의 변화에 따라 그 같은 윤리가 의무의 윤리로 대체된 만큼 덕의 윤리가 자립적 대안이 되기 위해서는 몇가지 선결문제에 대한 해법이 찾아져야 할 것이다. 또한 덕의 윤리가 대안이 아니라 하나의 보완책이라 생각될 경우 그러한 보완이 어떤 측면에서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질 것인지에 대해서도 세목에 걸친 점검이 요구된다 할 것이다.

Ⅲ. 덕 윤리의 자립적 재활(自立的 再活)을 위한 선결요건들

어떤 윤리의 자립성(autonomy of ethics)은 일정한 조건 아래서 그 윤리체계가 다른 윤리체계에 의존하거나 도움이 없이도 일상인의 행위지침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는지에 달려 있다. 한때 전통사회에서 덕의 윤리가 자립적 규범체계로서 기능을 할 수 있었던 것은 몇 가지 선행요건들이 충족된 상황이 성립했기 때문이었다. 덕의 윤리는 동서를 막론하고 전통과 관행을 공유하는 소규모 마을이나 촌락공동체 속에서 작동했던 규범체계였다고 할 수 있다. 이 같은 공동체에 있어서는 성원들이 대체로 상호 인지하는 가치관과 이를 구현하고 있는 전통과 관행을 공유하고 있었기에 덕의 윤리가 행위지침으로 가능할 수 있는 기반이 성립하고 있었다.

이같이 공유된 기반 위에서 성원들은 일정한 덕이 지정하는 도덕적 행위에 대한 공유된 인식을 지니고 상호간에 예측 가능한 기대 속에서 살 수 있었다. 이러한 공유된 인지적 지도는 덕의 도덕적 결정성(moral determinacy)을 상당한

정도로 제고했으며 그들의 예상이나 기대는 대체로 충족되었고 그로 인해 동기부여는 더욱 강화되었다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할 때 일정한 도덕체계는 사회구조와 긴밀한 상관성을 지닌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⁸⁾ 따라서 사회구조가 달라질 경우 새로운 사회구성체는 그를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할 수 있는 바, 그에 걸맞은 도덕체계를 요구할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중세가 지나 근세로 진입하면서 전통적인 공동체는 서서히 해체되었으며 성원들이 자신의 이해관계를 따라 이합집산하는 바 이익추구적 시민사회가 등장하게 된다. 이 같은 시민사회는 가치관의 분화와 다원화를 조장했으며 이를 관리할 수 있는 정치이념으로서 자유주의의 출현을 추동했다. 이 같은 자유주의적 다원사회는 연고적 유대가 공고했던 전통사회와는 달리 성원들 상호간에 고도의 익명성이 형성되었고 특히 공적 영역을 제외한 비(非)공적이고 사적인 영역에 있어서는 익명성의 보장이 요청되었다. 가치관의 다원성은 성원들 간의 규범체계를 최소화 할 것을 요구했으며 사생활에 대한 익명성의 요구는 규범의 공지성과 더불어 사회 윤리적이고 공적인 윤리로 추동해갔다.

덕의 윤리를 재활하고자 하는 프로젝트를 위해 요구되는 첫 번째 사항은 덕의 윤리가 갖는 도덕적 결정성을 제고하는 방도의 구상이다. 당면한 상황에서 덕이 제시하는 행위지침이 사람에 따라 다르게 해석될 경우 덕의 윤리는 도덕적 미결정성의 난점을 지니게 된다. 물론 동서의 덕 윤리는 이 같은 미결정성을 최대한 배제하기 위해 갖가지 방도를 모색해왔다. 아리스토텔레스는 도덕적으로 요구되는 의무사항들을 분명히 하기 위해 에토스와 노모스를 병렬했다. 서구의 스토아적 덕 윤리에 있어서는 덕과 규칙의 관계를 주체적으로 다룸으로써 규칙화가 덕 윤리에 있어서도 본질적으로 요구된다고 보았다. 동양의 유교윤리에 있어서도 규칙화를 통한 예(禮)의 체계를 제시함으로써 덕 윤리의 다양한 주관적 해석가능성을 최대한 경감하고자 했다.⁹⁾

근대이후 익명적이고 다원적인 시민사회에 있어서는 도덕적 결정성이 더욱

8) 황경식, 「도덕체계와 사회구조의 상관성」 참조.

9) 황경식, 「도덕행위의 動機化와 修養論의 문제」, 『철학』 제102집(2010 봄).

중요한 사항으로 제기됨에 따라 최소화 전략에 의거, 최소윤리로서 의무의 윤리로 대체시키고 명시화 전략에 의거 개별행위 중심적 윤리 내지 규칙중심적 윤리로 전환하기에 이른다. 그러나 이미 앞서 지적한 바와 같이 도덕적 결정성이라는 현실적 요구에 지나치게 집착할 경우 다양한 상황들에 내포된 애매성이나 주체의 자유로운 선택을 위한 창조성의 여지를 질식시키게 된다. 인간만사가 그러하듯 인간들이 당면한 도덕적 상황은 개념적 환원주의로 재단하기 어려우며 지나친 환원은 결국 우리의 도덕경험의 다양성을 무리하게 유린하는 결과를 가져오는 나머지 또 다른 극단적 대안을 추구하게 하는 빌미를 주게 된다.

만일 우리가 사정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덕의 윤리를 자립적 윤리체계로 재활하는 프로젝트에 집착한다면 우리는 그러한 덕의 윤리가 번성하고 행위지침으로서 작동할 수 있는 사회형태를 구상하고 현실사회를 그러한 형태로 재편성하고 개혁할 수 있는 전략을 제안하는 과제를 고민해야 한다. 사실상 대부분의 덕 윤리가 생겨난 기원이나 사회적 기반은 모두가 소규모 마을이나 촌락 공동체였다. 또한 매킨타이어(A. MacIntyre)를 위시해서 덕 윤리 재활을 위한 사회구성체에 관심을 갖는 책임있는 덕 윤리학자들은 모두가 이 같은 소규모 지역공동체(local community)를 덕 윤리 구현의 현실적 기반으로 제안하고 있다.¹⁰⁾ 그러나 과연 이 같은 소규모 공동체에 기반한 덕 윤리가 현실적이고 설득력있는 대안이 될 수 있는가? 만일 그렇지 못할 경우 덕 윤리학자들은 잃어버린 과거에 대한 노스탈자를 노래하는 무력한 낭만주의자들에 불과한 것이 아닌가?

물론 소규모 지역 공동체가 전적으로 현실적 호소력이 없는 대안은 아니다. 오늘날에도 도회지의 주변에 잔존하고 있는 마을 공동체들이 산재하고 있으며 또한 도시문화에 지친 자들이 뜻을 모아 삼삼오오 마을 공동체를 이루고자 하는 시도들이 있다. 또한 세계 곳곳에 민족, 종교, 혹은 삶의 방식을 공유하는자들 간에 시도되고 있는 공동체(Commune) 운동 또한 부분적으로 유망한 실험이기도 하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은 거대한 자본주의적 산업사회에 기생하는, 따라서

10) Alasdair MacIntyre, *After Virtue*, 2nd ed.(University of Notre Dame Press, 1984), 263.

그런 거대사회의 생산력과 공급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진정으로 현실사회를 소규모 공동체로 재편하고자 할 경우 보다 설득력있는 사회경제적 접근이 기필코 요청된다 할 것이다.¹¹⁾

결국 덕 윤리의 자립적 재할 프로젝트는 전적으로 비현실적인 것은 아니나 적어도 현대사회에 있어서 현실성이 희박한 발상이 아닌가 생각된다. 순수한 덕의 윤리가 인간의 행위지침을 제공하는 자립성을 갖는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그 어딘가에 준(準)법적인 의무윤리를 전제하거나 자신 속에 규칙화 절차를 도입함으로써 도덕적 미결정성을 배제하는 노력이 불가피하다고 생각되며 사회가 다원화, 복잡화 될수록 이 같은 절차에 대한 요청이 더욱 강해진다 할 것이다. 또한 덕 윤리의 자립적 재할을 위해 그에 걸맞은 공동체의 형태로 현대사회를 재편성하는 대안 또한 그다지 매력적이고 현실성 있는 대안이라 할 수 없는 것으로 보인다. 결국 우리의 결론은 덕의 윤리가 도덕체계로서 자립성을 견지하는 일은 개념적으로나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과제라 생각된다는 것이다.

IV. 의무(義務)윤리의 대안(代案) 아닌 보완(補充)으로서의 덕 윤리

덕의 윤리가 개념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윤리체계로서의 자립성(自立性)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앞 절의 논변이 어느 정도의 타당성을 갖는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세 이후 지배적인 의무의 윤리에 대한 상당한 불만족이 있다는 점 또한 의미 있는 메시지로써 받아들일 수 있다면 우리는 덕의 윤리가 의무윤리를 대체할 수 있는 대안(代案)은 아닐지라도 그 부족한 점을 채울 수 있는 보완책으로 수용할 수 있는 가능성을 타진할 수 있을 것이다. 자본주의에 기반한 현대의 자유주의적 다원주의 사회를 해체하고 소규모 지역사회로 재편성할 혁명적인 사회공학이 존재할 수 없다면 이 같은 가능성은 우리에게 차선책일지는 모르나

11) 황경식, 「도덕체계와 사회구조의 상관성」 참조.

현실적으로 가능한 유일한 출구일 것이기 때문이다.

맥킨타이어를 위시한 일부의 덕 윤리 학자들은 자본주의에 기반한 자유주의 사회가 덕의 윤리가 구현되고 변성하기가 불가능한 사회라고 본다. 특히 이점은 자본주의 사회에 있어서 노동의 단순화 내지 인간 소외현상과 관련해서 논의되고 있으며 이 같은 노동현실에 있어서는 노동이 단지 생존을 위한 수단화, 임금 노동화 됨으로써 외재적 가치를 지향하는 것일 뿐 내재적 가치를 지향하는 의미 있는 관행(*practice*)으로 성립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같은 노동의 인간소외 현상은 과거 가내수공업 시대에도 없었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오늘날에 있어서도 각종 전문직들에 있어 의미있는 관행이 될 수 있는 다양한 직종들이 있음에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이다.¹²⁾

노동의 인간소외가 없는 공동체로서 공산주의 사회(*communist society*)를 열망하면서도 자본주의적 생산양식에서나 가능한 거대한 생산력에 열광한 자가 마르크스였다. 우리 역시 현대의 사회경제적 토대를 전적으로 부정하지 않는 한에서, 나아가 그 위에 기반한 자유주의적 다원사회를 인정하는 한에서 의무의 윤리를 규범의 근간으로 하되 덕의 윤리가 어떤 점에서 이를 보완할 수 있을지 고민해보고자 한다. 우선 의무의 윤리는 근세 이후 우리의 도덕생활에 있어 주로 공적인 영역에 적용하기 위해 구상된 윤리이다. 따라서 덕의 윤리는 일차적으로 비(非)공적이고 사적인 영역에 보다 적합한 윤리라 생각된다.¹³⁾ 지금 우리의 일상에서도 사회윤리나 공공도덕보다는 개인윤리에 있어서 덕 윤리의 전통이 많이 잔존하고 있음도 이점과 상관된다 할 것이다.

그러나 덕의 윤리가 일차적으로 영역 구분으로 보아 비(非)공적이고 사적인 영역에 보다 적합한 윤리임이 사실이기는 하나 일단 이점을 받아들이고 나면 사실상 덕의 윤리는 이 같은 영역 구분을 넘어 다양한 영역과 직종에 광범위하게

12) Andrew Mason, "MacIntyre on Modernity and How It has Marginalized the Virtues" in *How Should One Live?: Essays on the Virtues*, ed. Roger Crisp (Clarendon Press Oxford, 1996), 199.

13) 황경식, 「도덕체계와 사회구조의 상관성」 참조.

응용될 여지가 있음을 수증하게 된다. 덕의 윤리는 사적 영역을 넘어 공적인 영역 즉 시민윤리에 있어서도 시민의 덕을 함양하고 교육하는 데 있어서 유용하다. 또한 공직자의 덕을 위시하여 교육자, 법조인, 의료인 등 역시 그 직종에 맞는 미덕을 개발하고 교육할 수 있는 여지가 생긴다. 그래서 근래에는 직업윤리에 있어서도 성공(success) 못지않게 봉사(service)의 측면도 강조되며 덕의 윤리는 직장인의 성공만이 아니라 인간으로서의 보람과 행복을 위해서도 강조되고 있다.¹⁴⁾

자유주의는 비록 덕을 정치의 목적으로 하는 완전주의(perfectionism)에 대해서는 비판적이지만 덕을 정치의 수단으로 수용하는 입장까지 배척할 이유가 없다고 할 수 있다.¹⁵⁾ 자유주의가 덕을 배제할 이유가 없음을 이해하기 위해 정치의 주요 목적이라 할 수 있는 정의의 수행 방식을 생각해보자. 이 같은 방식 중 하나는 정의의 원칙이 행위를 강제하는 부담으로서 외면적, 형식적으로만 그에 따르는 수행 방식이다. 이럴 경우 공적인 영역에서는 처벌의 공포가 두려워 정의의 원칙에 따르게는 될 것이나 그것이 성격에 영향을 주지 않는 한 사적인 영역에서는 여전히 부정의를 쉽사리 자행할 가능성이 열려있게 된다.

이는 자유주의 사회를 안정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불충분한 수행 방식이 아닐 수 없다. 나아가 그것은 오히려 자유주의를 자멸시키는 결과로 이끌 수도 있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려울 것으로 생각된다. 자유주의는 정의의 원칙을 내면화 하고 그에 기반해서 행동하는 수행 방식을 선호할 것으로 보인다. 이런 수행방식에서는 정의의 원칙이 단순히 행위만이 아니라 성격의 형성과 변화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¹⁶⁾ 이같이 생각할 때 자유주의에서 배제되고 있는 것은 정치의 외재적인 목적으로서 덕일 뿐 정치에 내재하는 수단으로서의 덕, 즉 타인의

14) Timo Airaksinen, "Professional Ethics," *Encyclopedia of Applied Ethics*, vol.3(Academic Press, 1998), 677.

15) Andrew Mason, "MacIntyre on Modernity and How It has Marginalized the Virtues," 199

16) Andrew Mason, "MacIntyre on Modernity and How It has Marginalized the Virtues" 참조.

권리를 존중하고 다른 의견을 가진 자에 대해 관용을 베풀며 정의에 자발적으로 따르고자 하는 성향 즉 정의감 등을 오히려 필수적으로 요청한다 할 것이다.

근세 이후 다원주의라는 사회적 현실에 대한 대응책을 추구하는 가운데 정치적으로는 자유주의가, 도덕적으로 의무윤리 등 최소주의적 전략이 제시되었다. 비록 다소 다른 두가지 측면에서 제안된 것이긴 하나 이들은 모두 다원주의를 관리하기 위한 근대적 프로젝트(modern project)의 일환이라 할 수 있다. 그런데 지금까지 일반적으로 자유주의나 의무윤리는 덕의 윤리에 대해 적대적이거나 아니면 적어도 비우호적이라는 견해가 지배적이었다. 그러나 우리가 보기에 이 같은 견해는 지극히 흑백논리적 발상에서 유래한 것으로 보인다. 최대윤리이건 최소윤리이건 혹은 공동체주의이건 자유주의이건 간에 그에 걸맞는 덕 윤리는 구상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충분히 실현가능할 것으로 생각된다.

물론 자유주의적 다원사회가 덕목들이 번성하게 될 환경으로서 최상의 조건은 아닐 것이며 소규모 지역공동체가 보다 유리한 조건일지도 모른다. 그러나 제대로 된 시민교육이나 덕성교육을 통해 유덕한 시민의 육성이 불가능한 것으로 생각되지는 않는다. 시민들이 그 같은 덕목을 제대로 갖추지 못함으로써 의무나 정의를 위배했을 경우 당하게 될 처벌의 고통이 그 같은 덕목 습득을 재촉하는 동기화의 에너지가 될 수도 있을 것이며 나아가 그런 덕목의 체득으로 인해 자족하고 행복한 삶의 영위가 또 다른 하나의 유인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여하튼 이 같은 주장들의 진위는 경험과학적 검증에 의해 밝혀질 것인바, 자유주의적 다원사회가 원리상 덕의 윤리에 비우호적이라는 입장은 자명한 것은 아니라 판단된다.

V. 윤리교육(倫理教育)의 새로운 모형과 수양론(修養論)의 문제

근래에 우리는 윤리교육이라 하면 도덕적 사고(moral thinking)를 중심으로 한 교육을 떠올리게 되고 또한 이런 교육은 자주 도덕적 선택을 두고 고심하는 딜레마(dilemma) 모형을 기반으로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모형에는 도덕적

행위자가 선택의 기로에서 둘 이상의 선택지를 두고 자신이 당면한 문제상황의 해답을 찾기 위해 숙고하는 것으로서 도덕적 사고력을 개발하는 데 크게 도움을 줄 수 있다. 그러나 우리의 도덕적 실천에 있어서는 이 같은 지적인 각성이나 인지적 요인이 우선적으로 중요한 것이 사실이나 그것이 충분조건일 수는 없는 것이다.

도덕적 선택상황에 당면하여 우리는 자주 딜레마에 봉착하여 고심하는 것도 사실이지만 그에 못지 않게 옳은 길이 무엇인지를 알면서도 갖가지 유혹이나 외적, 내적 장애로 인해 행동으로 옮기지 못하는 경우도 많다. 이 가운데서도 특히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내적인 장애와 관련된 것으로서 옳은 것을 알면서도 의지의 나약이나 감정의 부조화로 인해 그것을 행하지 못하거나 행하더라도 주저하거나 마치 못해 행하게 되며 행한 후에도 마음이 편하지 못한 경우들이다. 이는 도덕적 실천과 관련하여 지적인 각성에 더하여 의지의 강화나 감정의 조율 문제가 중요하며 그와 상관된 교육의 필요성을 함축하고 있다 할 것이다.¹⁷⁾

물론 의지의 나약과 감정의 부조화는 자주 중첩되기도 한다. 좋은 것과 옳은 것이 무엇인지를 알기는 하나 그것을 기꺼이 행하거나 행하고서 즐거움을 느끼고 행복해하는 감정적 조율이 없다면 그러한 행위를 행하고자 하는 의지 또한 나약하고 취약할 것은 당연하다 할 것이다. 그래서 희랍철학에서와 같이, 오늘날 우리의 개념과 같은 의미의 의지라는 말이 없을 경우에도 지적인 불완전이나 감정의 부조화만으로 도덕적 실패를 온전히 표현할 수 있기도 했다. 그러나 의지의 나약과 감정의 부조화가 언제나 일치하는 것은 아니며 개념적으로나 경험상으로 양자는 엄연히 구분될 수 있다. 물론 이 양자를 구분할 경우에 있어서도 의지와 감정은 언제나 긴밀한 상관관계 속에서 다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희랍철학에 있어서 결여(akrasia)는 의지의 나약으로 옮겨서는 오해의 소지가 있으며 이는 자제심의 결여라 함이 옳을 것이다.¹⁸⁾

17) 황경식, 「도덕행위의 動機化와 修養論의 문제」 참조.

18) 전공자가 아닌 학자들 사이에는 상당한 오해가 있으나 전공자들 사이에는 akrasia가 자제심의 결여로 옮기는 것에 합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듯하다.

물론 이 같은 자제심의 결여가 생겨난 원인은 지식의 불완전에서 올 수도 있고 감정의 부조화에서 유래할 수도 있으며 오늘날 우리의 용례에서와 같이 의지의 나약에서 올 수도 있을 것이다. 소크라테스(Socrates) 같이 주지주의적 성향의 철학자는 그 같은 자제심의 결여를 지적인 각성에서 해결하고자 할 것이며 주정주의적 입장에 서는 철학자는 감정의 조율에서 해법을 찾고자 할 것이고 기독교 사상에서와 같이 주의주의적 입장에 설 경우에는 의지의 연마와 단련을 통한 의지력 강화로 극복하고자 할 것이다.

이상과 같은 관점에서 고려할 때 도덕교육을 현행과 같이 도덕적 사고교육에 국한할 경우 우리가 도덕교육의 목적을 제대로 달성하기가 어렵다 할 것이다. 도덕적 실천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인지적 개발이나 각성에 더하여 의지를 단련하고 연마하는 프로그램과 감정을 정화하고 조율하는 프로그램이 요구된다 할 것이다. 우리의 교육이 지나치게 인지주의적이고 지식위주의 교육으로 왜소화되기 이전 우리의 교육이념은 지육(知育), 덕육(德育), 체육(體育) 등 3위1체를 기반으로 한 적이 있다. 또한 입시 위주의 교육으로 파행적으로 운영되기 이전 교육은 갖가지 예능교육의 보조를 받을 수 있었다. 미술과 음악 등과 더불어 덕육과 체육 등은 모두가 의지강화와 더불어 감정조율에 기여한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이 모든 교육들이 정상화되고 복권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빨리 입시위주의 교육에서 벗어나야 하고 그러한 교육과정보다 현대화된 프로그램으로 개발되어야 할 것이다.

덕의 개발과 함양의 과제는 위에서 지적했듯 지적인 각성, 의지의 강화, 감정의 조율 등 마음의 전반적인 기능들이 동참하는 그야말로 전인격적인 프로젝트라 할 수 있다.¹⁹⁾ 그러나 또한 인간이 합리적인 존재인 한 이 세 가지 기능 중에 주도적인 것은 어디까지나 인지적인 기능이 되지 않을 수 없다. 인지적인 기능의 안내에 따라 의지가 단련되어야 하고 감정이 조율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 같은 기능들의 제휴 아래 성취되는 결과가 덕 윤리에 있어서는 유덕한

19) 황경식, 「도덕행위의 動機化와 修養論의 문제」 참조.

인격이나 성품(traits of character)이라 할 수 있다. 덕 윤리의 일차적 목표는 개별 행위가 아니라 그러한 행위의 기반이 되는 성품 즉 존재의 변화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성품의 형성 또한 개별행위들이 집적된 산물이라면 행위와 성품간의 관계에 대해서는 보다 깊은 논구가 요구된다 할 것이다.

근세 이후 지배적인 의무의 윤리는 성품형성보다는 개별행위를 중심으로 논의가 이루어졌다. 그리고 개별행위에 대해서도 우리의 도덕 판단이나 의도를 외적으로 표현하는 수행적(performative) 기능에 초점을 두고 있었다. 그래서 행위자로부터 개별행위는 원인과 결과의 단선적이고 일방적인 인과관계 속에 있게 된다. 그러나 덕의 윤리는 행위의 이 같은 수행적 기능만이 아니라 그 개별행위의 결과가 다시 행위자에게 영향을 미쳐 그의 성품을 변화시키고 형성하는 바 행위의 형성적(formative) 기능에도 주목한다. 따라서 행위자로부터 행위로 단선적인 인과관계가 성립하는 것이 아니고 다시 행위로부터 행위자에게 인과적 영향을 미치는 바 복선적인 피드백 관계가 형성된다는 것이다.²⁰⁾

나아가서 이상과 같이 행위자에서 행위로 그리고 행위에서 다시 행위자으로 인과적 영향이 복합적으로 오가는 가운데 성향과 성품이 형성되고 그와 더불어 어떤 인식이 형성, 발전하게 된다. 그런데 이 같은 인식이 단지 이론적인 인식이 아니고 현실의 실천적 맥락에서 형성된 실천적 지식(practical Knowledge)의 함축을 지니게 된다. 실천적 지식은 더욱 세련되고 발전됨으로써 보다 온전한 실천적 지식 즉 실천적 지혜(practical wisdom)의 단계에로까지 나아가게 된다. 이 같은 지식의 형태에 있어서는 이원적으로 성립하는 지(知)와 행(行)이 새삼스럽게 어떤 관련을 맺는 것이 아니고 이미 태생적으로 실천적 맥락에서 생겨난 지혜인 까닭에 ‘알면 행한다’는 명제가 의미 있는 입론으로 이해될 수 있는 것이다.²¹⁾

이상과 같이 행위의 형성적 기능과 실천적 지혜에 주제적 관심을 가진 덕 윤리학자들은 동서를 두루해서 그 숫자가 적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아리스토텔레

20) Aristotle, *Nicomachean Ethics*, 1104 b3-8.

21) 황경식, 「도덕행위의 動機化와 修養論의 문제」 참조.

스의 윤리학에서는 어린시절에 반복적인 습관화를 통해 덕의 습득을 암시했을 뿐 덕의 함양을 위한 자율적인 수양론이나 공부법에 대한 자상한 천착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덕성교육은 어린시절 한때 거치는 것이 아니라 부단한 자기 수양과 수행을 통해 진행되어야 할 평생교육의 과제가 아닐 수 없으며 이 점에서 불교의 수행법이나 유학의 수양론은 덕 윤리 교육을 위해 참조되어야 할 소중한 유산이 아닐 수 없다. 이점에서 ‘도를 닦고 德을 쌓자’는 것은 덕 윤리의 영원한 과제이자 명법이라 생각된다.

[부록] 의무의 윤리와 덕의 윤리 대비표

의무의 윤리(Morality of Duty)	덕의 윤리(Morality of Virtue)
의무주의(Deontology) → 비결과주의윤리 결과주의(Consequentialism) → 공리주의	목적주의적(Teleological) → Aristotelian 비목적주의적(Non-teleological) → Non-Aristotelian
행위 중심적(Action-centered) → 개별행위중시	행위자 중심적(Agent-centered) → 성품, 존재중시 (Traits of character, Being)
규칙 중심적(Rule-oriented) → 도덕은 규칙의 체계	덕목 중심적(Virtue-oriented) → 규칙화의 한계 인지
의무 중심적(Duty-centered) → 최소윤리관(Minimum M)	의무+의무이상의 행위(Duty+a) → 최대윤리관(Maximum M)
정당화중시>동기화 보조 (Justification > Motivation) → 도덕인식론, 규범윤리로 발달	동기화중시>정당화 보조 (Motivation>Justification) → 수양론, 도덕교육론 발달
도덕적사고교육(Moral Thinking) → 도덕적 딜레마(Moral Dilemma) 모 형이용	덕성함양교육 (Cultivation, Inculcation of Virtues) → 수양론 중시 (지적각성, 의지단련, 감정조율)

참고문헌

- 황경식(1978), 「도덕체계와 사회구조의 상관성」, 『철학사상』 제32호.
- 황경식(2010), 「도덕행위의 動機化와 修養論의 문제」, 『철학』 제102집.
- Airaksinen, Timo(1998), “Professional Ethics,” *Encyclopedia of Applied Ethics* vol.3, Academic Press.
- Aristotle, *Nicomachean Ethics*.
- Gewirth, Alan(1985), “Rights and Virtues,” *Review of Metaphysics* 38.
- Hwang, Kyungsig(2008), “Dialogue between Eastern and Western Morality: Complementarity of Duty Ethics and Virtue Ethics,” *Philosophy and Culture* Vol.4.
- MacIntyre, Alasdair(1984), *After Virtue*, 2nd ed., University of Notre Dame Press.
- Mason, Andrew(1996), “MacIntyre on Modernity and How It has Marginalized the Virtues” in *How Should One Live?: Essays on the Virtues*, ed. Roger Crisp, Clarendon Press.
- Stocker, Michael(1997), “The Schizophrenia of Modern Ethical Theories” in *Virtue Ethics*, eds. Roser Crisp and Michael Slote, Oxford University Press.

【Abstract】

Why does virtue ethics matter again in contemporary society? It seems to be that since modern age, duty ethics as a result of minimalizing and visualizing strategy in order to upgrade the moral determinacy is insufficient and unsatisfactory in our moral life. At first, one of the drawbacks of duty ethics is its over-reductionist tendency to simplifying the variety of our moral life or moral experiences to morally required obligations, and its over-empathizing on moral justification and not caring for moral motivation and moral practice. At last, modern moral philosophy, with its desire for explicit and univocal decision procedures, has stubbornly assumes that moral conflicts must be only apparent and there must be a monistic system of moral rules. In keeping with its rejection of the concept of moral duties, virtue ethics also downgrade the moral rules which prescribes how each person is to act. But what, then, is the caritria for virtue? On this basic question, virtue ehtics is confronted by a crucial difficulty, that besets any conception which does not base the virtues on moral rule for action. This difficulty is moral indeterminacy. Furthermore, if it is true that the system of ethical norms had a close relationship to their social structure, the attempt to revive virtue ethics in this post-in dustrial era implicitly points to the reconstruction of a new society. It seems to be that a society befitting virtue ethics is something similar to small-scale local community. I think it is implausible project. Consequently, our main agument is that virtue ethics is not alternative but complementary of duty ethics.

【Keywords】 duty ethics, virtue ethics, moral determinacy, minimum morality, justification, motivation.

논문 투고일: 2010. 08. 16

심사 완료일: 2010. 10. 04

게재 확정일: 2010. 10. 11